| 투자위험등급<br>2등급[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흥국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 1 호(H)[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 1 호(H)[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흥국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hk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2년 08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년 09월 2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흥국자산운용㈜ 본점(☎ 02-2122-2800, www.hkfund.co.kr)

   각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효력발생일 전에 정정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 **DL712**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DL713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DL71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DL71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DL71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펀드 등(C-f) | DL71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DL71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C-w) | DL71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DL720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DL721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DL722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DL723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DL72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DL72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 DL726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인 "NIKKO AM ARK DISRUPTIVE INNOVATION FUND"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상세 목차


## 제 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사항

## 제 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2.08.31)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DL712)**

|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흥국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재간접투자위험, 파생상품위험, 환율변동위험, 국가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1) 투자목적**<br>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br>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br><br>**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br>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br><br>**[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투자 필요성]**<br>**NIKKO AM ARK DISRUPTIVE INNOVATION FUND**<br>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투자 테마인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관련된 글로벌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인 Nikko 자산운용은 1959년에 설립되어 글로벌 11개국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말 기준 2,823억 달러를 운용하는 아시아 최대의 운용사 중 하나로 높은 수준의 재무건전성과 운용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흥국자산운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파괴적 혁신과 관련된 글로벌 주식 등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수요를 대응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br>**2) 투자전략**<br>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을 투자합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br>선도환 거래 등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미국 달러 등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br>**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br>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 자본 성장 달성을 추구합니다.<br><br>**[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요 투자전략]**<br>**NIKKO AM ARK DISRUPTIVE INNOVATION FUND**<br>이 펀드는 파괴적 혁신 투자 테마에 부합하는 글로벌 주식 등을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펀드 자산의 최소 60% 투자를 목표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나머지는 기타 양도성 증권, 단기금융상품 또는 현금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UCITs나 UCIs에는 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br><br>**※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br>-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특정한 비교지수를 지정하여 추종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수행하므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평가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시 성과비교를 위한 비교지수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br>-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투자자께서는 [MSCI World Net Return USD Index]를 참조지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MSCI World Net Return USD Index는 선진주식시장 대형 및 중형주 시가총액의 약 85%를 설명하는 지수입니다. 본 참조지수의 성과는 |

https://www.investing.com/indices/ msci-world-net-usd 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천원) | | | | |
|---|---|---|---|---|---|---|---|---|---|---|
| | 판매 수수료 | 총보수 | 판매 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1.1900** | 0.7000 | 1.0000 | 2.1341 | 318 | 542 | 772 | 1,252 | 2,654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 없음 | **1.4900** | 1.0000 | 1.3100 | 2.4344 | 250 | 505 | 768 | 1,315 | 2,915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 **0.8400** | 0.3500 | 0.6400 | 1.7828 | 232 | 420 | 612 | 1,013 | 2,184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없음 | **0.9900** | 0.5000 | 0.8600 | 1.9339 | 198 | 402 | 610 | 1,044 | 2,315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7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총보수 비율은 연간 [0.94%]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타비용은 제외)로 추정하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 클래스 종류 | 최초 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2021/09/01 ~ 2022/08/31 | - | - | - |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2021.09.23 | - | - | - | - | -65.84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 2021.09.23 | - | - | - | - | -65.97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2021.09.23 | - | - | - | - | -65.69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2021.09.23 | - | - | - | - | -65.74 |
| 비교지수 | - | - | - | - | - | - |
| 수익률 변동성 | 2021.09.01 | 46.32 | - | - | - | 46.32 |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해외재간접형, 단위:%) | | | | 운용경력 년수 |
|---|---|---|---|---|---|---|---|---|---|
| | | | 집합투자기구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박상건 | 1982 | 책임(팀장) | 27개 | 3,175억 | 0.00 | 0.00 | 0.00 | 0.00 | 13년5개월 |
| 김병걸 | 1976 | 부책임(팀장) | | | 0.00 | 0.00 | | | 9년3개월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table>
<tr>
<td>투자자<br>유의사항</td>
<td>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br>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r>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br>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d>
</tr>
<tr>
<td>주요투자<br>위험</td>
<td>
<table>
<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투 자 원 본 에 대한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tr>
<tr><td>환 율 변 동 위 험</td><td>이 투자신탁은 다수의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외화표시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위험을 축소하고자 이 투자신탁에서는 주요 통화 대비 원화의 변동에 한해 부분 환헤지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환헤지에도 불구하고, Roll-Over, NAV 변동, 선물/선도환 시장 변화, 목표비율과 실제 비율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분 환헤지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br>※환위험관리 :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br>환헤지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td></tr>
<tr><td>재간접 투자위험</td><td>본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td></tr>
<tr><td>파생상품 위험</td><td>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때때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을 달성하고 수익률을 높이며 포트폴리오 분산을 목적으로 직접 투자의 방편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에 추가하여, 파생상품의 경우 가격산정 및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변동이 관련 기초자산, 금리 또는 지수의 변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
<tr><td>국 가 위 험</td><td>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로 해외 투자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위펀드의 투자대상 국가와 설립 국가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 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 이 투자신탁 운용과정</td></tr>
</table>
</td>
</tr>
</table>

| | |
|---|---|
| | 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현실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가입 클래스 변경 위험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가입클래스를 더 이상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이 투자신탁이 가입한 클래스를 다른 적절한 클래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격, 보수체계 등의 변경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가 기대하는 성과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성과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가입 클래스 해지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가입클래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및 상위펀드에 대한 인가의 종료,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의 청산 등의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및 가입클래스가 해지되어 예기치 않은 비용의 지출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소규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변경 위험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NIKKO AM ARK DISRUPTIVE INNOVATION FUND"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매입방법** |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br>·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환매방법** |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br>·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br>-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총 순자산을 참조하여 산정됩니다. 총 순자산은 각 보유하고 있는 자산항목 모두를 합한 금액에 관련 부채 및 약정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기준가격은 총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

| | | |
|---|---|---|
| **과세** |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 |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
| **집합투자업자** | 흥국자산운용㈜ 대표번호 : 02-2122-28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kfund.co.kr | | |
| **모집기간** |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
| **효력발생일** | 2022년 09월 29일 | **존속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 | |

| | |
|---|---|
| | 관한 사항 (55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선취 (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후취 (S)** |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미징구 (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S)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 슈퍼 (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기관, 펀드 등(F)** |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펀드, 변액보험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고액(I)** | 고액투자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 금전신탁(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개인연금 (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 (P2)(PR)**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hk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kfund.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kfund.co.kr)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 **DL712**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DL713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DL71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DL71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DL71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펀드 등(C-f) | DL71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DL71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C-w) | DL71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DL720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DL721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DL722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DL723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DL72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DL72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 DL726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1)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hk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 **DL712**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DL713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DL71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DL71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DL71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펀드 등(C-f) | DL71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DL71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C-w) | DL71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DL720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DL721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DL722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DL723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DL72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DL72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 DL726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시행일 | 변경 사항 |
|---|---|
| 2021.08.21 | 집합투자기구 최초 효력발생일 |
| 2021.09.07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추가투자 |
| 2022.07.28 | 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양병태→오현지)<br>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오현지→김병걸)<br>3) 기업공시서식 반영 |
| 2022.08.24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오현지→박상건) |
| 2022.09.29 | 1)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br>2) 법 개정사항 반영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 회사명 | 흥국자산운용주식회사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흥국생명빌딩 19층)<br>(Tel 2122-2800, www.hkfund.co.kr) |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2.08.31 기준)

**가. 운용전문인력** (단위: 개, 억원)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해외재간접형, 단위:%) | | | |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
|---|---|---|---|---|---|---|---|---|---|
| | | | 집합투자기구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박상건 | 1982 | 책임<br>(팀장) | 27 | 3,175 | 0.00 | 0.00 | 0.00 | 0.00 | * 운용경력 : 13년 5개월<br>- 09.03~17.12 :<br>유리자산운용 대안투자팀<br>- 18.01~19.05 :<br>두나무투자일임 운용실<br>- 19.06~현재 :<br>흥국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
| 김병걸 | 1976 | 부책임<br>(팀장) | | | 0.00 | 0.00 | | | * 운용경력 : 9년 3개월<br>- 07.03~08.07 :<br>일본RBS증권<br>- 13.05~15.11 :<br>삼성증권 AI운용팀<br>- 16.04~19.08 :<br>유리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br>- 19.09~20.02 :<br>골든브릿지자산운용 구조화운용실<br>- 20.02~20.08 :<br>유리자산운용 해외투자본부<br>- 20.09~현재 :<br>흥국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글로벌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이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없음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2021.09.01 글로벌운용본부 양병태(1968) 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22.07.28 말소
- 2022.07.28 글로벌운용본부 오현지(1982) 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22.08.24 말소
- 2022.08.24 글로벌운용본부 박상건(1982) 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②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2021.09.01 글로벌운용본부 오현지(198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22.07.28 말소
- 2022.07.28 글로벌운용본부 김병걸(1976)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의 운용전문인력과 같음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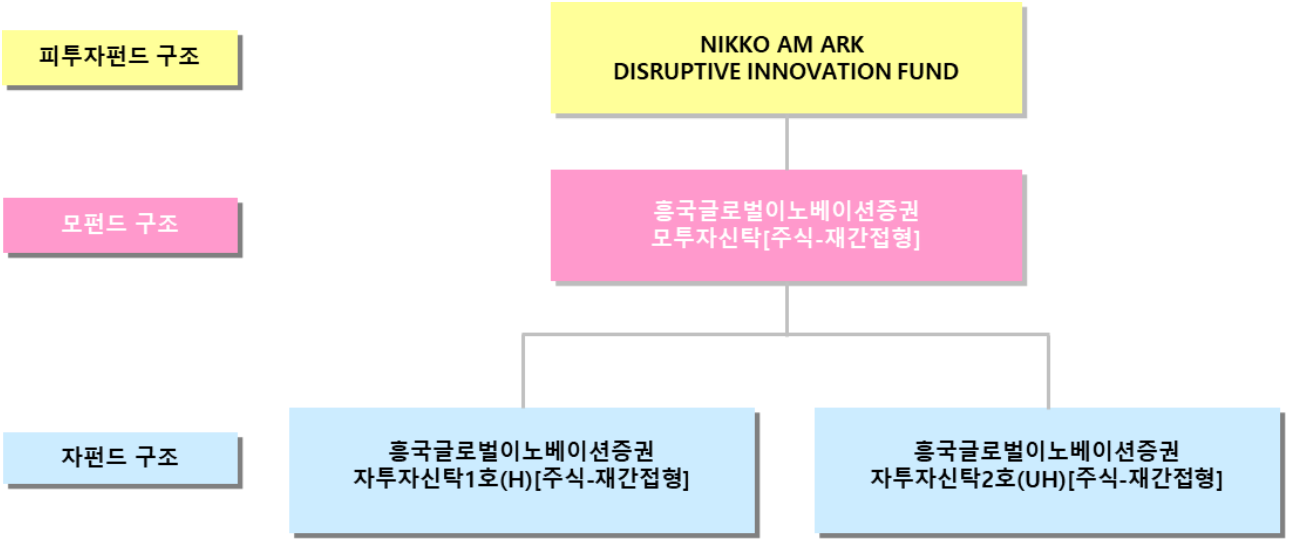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선취 (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후취 (S) |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미징구 (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S)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기관, 펀드 등(F)** |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펀드, 변액보험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고액(I)** | 고액투자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 금전신탁(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개인연금(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P2)(PR)**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투자신탁 |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 투자비중 |
|---|---|---|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 90% 이상 |
|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2호(UH)[주식-재간접형] | 90% 이상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모투자신탁명 | 구분 | 내용 |
|---|---|---|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요투자대상 |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
| | 투자목적 | 모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 | |
|---|---|---|
| 재간접형] |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 모투자신탁은 세상을 변혁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이를 통한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도입이라고 정의되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관련된 글로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 자본 성장 달성을 추구합니다.<br>- 모투자신탁은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사전 인식 및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br>- 모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외국통화가치변화에 따라 신탁재산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투자 필요성]**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투자 테마인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관련된 글로벌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인 Nikko 자산운용은 1959년에 설립되어 글로벌 11개국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말 기준 2,823억 달러를 운용하는 아시아 최대의 운용사 중 하나로 높은 수준의 재무건전성과 운용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흥국자산운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파괴적 혁신과 관련된 글로벌 주식 등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수요를 대응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선정 기준 및 선정 프로세스]**

1.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선정 기준
   - 투자목적 부합성: 파괴적 혁신(세상을 변혁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이를 통한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도입) 투자 테마를 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운용전략을 보유한 운용사인지 확인
   - 운용투명성: 하위 펀드의 운용방식과 목적이 명확하고 실제 운용이 이러한 운용목표에 부합하는지 점검
   - 거래 유동성: 하위펀드 거래가 펀드의 설정 및 환매 기한에 부합하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선정 프로세스
   - 정량적 분석: 운용성과, 운용규모, 운용기간, 장단기 성과 및 지표, 운용인력 경험 및 규모 등 정량 데이터를 기초로 스코어링 실시
   - 정성적 분석: 투자철학 및 원칙, 투자원칙 적용의 일관성, 고객 서비스(정보접근성 등) 등을 평가
   - 펀드 실사: Fact Sheet을 비롯한 펀드자료분석, 펀드 운용팀과의 이메일, 컨퍼런스콜, 화상회의 등 현지 운용사 점검을 통해 축적된 자료 활용
   -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펀드를 1차 선별후 정량, 정성 요건에 맞는 펀드를 최종 확정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흥국자산운용은 이메일, 컨퍼런스콜,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였습니다. 주기적인 이메일과 컨퍼런스콜 등 통해 펀드 기본정보 및 자료를 전달/확인 받았으며, 화상회의를 통해 투자 프로세스, 운용성과, 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펀드의 주요 기간별 성과분석, 운용팀 코멘터리, 운용사의 가치평가 방법론, 위험관리 프로세스 적용에 대한 이해, 타 경쟁펀드대비 경쟁력과 특이점 확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글로벌 파괴적 혁신 주식에 대한 운용역의 전망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투 자 대 상 | 투 자 비 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90% 이상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파생상품 |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 |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 |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 10% 이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br>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br>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br>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br>라. 상기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br>다만, 집합투자규약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를 위한 모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다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①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②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③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④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②투자신탁 일부해지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그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투 자 대 상 | 투 자 비 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집합투자증권등 | 50% 이상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
| 주식 | 40% 이하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
| 채권 | 40% 이하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
|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
| 어음등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 | |
|---|---|---|
| | | 을 포함한다)(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
| 환매조건부매도 |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
| 증권의 대여 | 증권총액의 50% 이하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대여 |
| 증권의 차입 | 20% 이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기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④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①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②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③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④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②투자신탁 일부해지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그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2호 본문,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①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③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NIKKO AM ARK DISRUPTIVE INNOVATION FUND**

| 구 분 | 내 용 |
|---|---|
| 집합투자업자 | Nikko Asset Management<br>하위집합투자업자 Nikko Asset Management Americas, Inc. |
| 투자자문회사 | ARK Investment Management LLC. |
| 주된 투자대상 | 세상을 변혁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이를 통한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도입이라고 정의되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관련된 글로벌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
| 펀드 종류 | 주식형 |
| 펀드 규모<br>(2021년5월말 기준) | USD 9,280,167,615 (약 10.3조원) |
| 설정일 | 2018년 8월 29일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 분 | 내 용 | 예외 |
|---|---|---|
| 이해관계인 투자 |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br>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br>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 파생상품 투자 |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행위<br>-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br>-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1개월간 |
| | -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구 분 | 내 용 | 예외 |
|---|---|---|
| 이해관계인 투자 |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br>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 |

| | | |
|---|---|---|
|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동일종목 투자 |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br>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 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 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br>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 최초설정일로부터1개월간 |
| 동일법인 투자 |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집합투자증권 투자 |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
|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 최초설정일로부터1개월간 |

| | | |
|---|---|---|
| |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
| |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을 투자합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선도환 거래 등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미국 달러 등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외국통화표시자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외국통화표시자산 순자산총액의 90% 수준**으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환헷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 분 | 투자위험 주요내용 |
|---|---|
| 환헤지의 장단점 |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해외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

| | |
|---|---|
| 환헤지의 비용 |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장상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 되어 있어 환헤지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계약환율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용을 별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 하지 않습니다. |
| 환헤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되며,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 수익율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특정한 비교지수를 지정하여 추종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수행하므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평가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시 성과비교를 위한 비교지수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투자자께서는 [MSCI World Net Return USD Index]를 참조지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MSCI World Net Return USD Index는 선진주식시장 대형 및 중형주 시가총액의 약 85%를 설명하는 지수입니다. 본 참조지수의 성과는 https://www.investing.com/indices/msci-world-net-usd 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 자본 성장 달성을 추구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NIKKO AM ARK DISRUPTIVE INNOVATION FUND**

| 구 분 | 내 용 |
|---|---|
| 설립 국가 및 설립 국가의 감독기관 | - 설립 국가 : 룩셈부르크(Luxembourg)<br>- 설립 국가의 감독기관 :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br>- ISIN Code: LU1861556378 |
| 주요 투자목적 | 1)투자목적 및 비중 |

| | |
|---|---|
| 및 투자전략 | 이 펀드의 투자목적은 파괴적 혁신 투자 테마에 부합하는 글로벌 주식 등을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펀드 자산의 최소 60% 투자를 목표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나머지는 기타 양도성 증권, 단기금융상품 또는 현금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UCITs나 UCIs에는 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br><br>2) 투자절차<br>투자자문을 맡고 있는 ARK Invest로부터 모델포트폴리오를 제공 받아 UCITs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투자합니다.<br>①투자아이디어 도출<br>- 글로벌 주요 지수 및 MSCI와 ARK Invest가 공동으로 개발한 MSCI ACWI IMI Innovation Index에 포함된 종목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선정. 투자 유니버스 상위 개념인 Watch List에는 성장 초기 단계부터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비상장기업도 포함<br>- 투자아이디어 생성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완성도 강화<br>- 유동성 부족 종목은 제외<br><br>②투자원칙<br>- 운용역과 애널리스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ARK의 5가지 이노베이션플랫폼과 14가지 테크놀러지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br>- 6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종목별 스코어링 산출. 각 카테고리에서 최소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투자 가능<br>- 최소 투자 가능 점수에 부합하는 종목에 대해 밸류에이션을 수행하며, 최소 투자기간인 5년간 최소 연평균기대수익률이 15% 이상인 종목을 최종 투자 가능군으로 지정<br><br>③종목 선정<br>- 종목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6가지 판단 요소는 1) 기업 문화 2) 경영 전략 및 관리 3) 진입장벽 4) 제품력 5) 밸류에이션 6) 기타(Thesis Risk)가 있음<br>- 일간/주간/월간 투자 미팅을 통해 탑다운과 바텀업 측면 투자포인트 점검 및보완<br><br>④포트폴리오 구축 및 리스크 관리<br>- 종목별 유동성과 포트폴리오 집중화 리스크(Concentration Risk)를 고려하여 50개 내외의 포트폴리오 유지. 단, 정해진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수는 없음<br>-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하락 국면에서는 매수 확신(Conviction Buy) 종목으로 압축하며, 시장 상승 국면에서는 보유 주식수를 확대<br>- 종목별 스코어링은 자체 개발한 콜라보레이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최소 투자 가능 점수를 하회할 경우 종목 전면 재검토 실시 |

주1) 상기 내용은 한국에 등록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최근 정정신고일 기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거하여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상세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관련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신 후 투자여부에 대한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할 예정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시장 상황, 해외 집합투자업자의 상황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교체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사전인식 및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험관리]**

**NIKKO AM ARK DISRUPTIVE INNOVATION FUND**

| 구 분 | 내 용 |
|---|---|
| 위험관리 전략 | 집합투자업자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정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입수합니다. 운용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기간별 펀드 및 참조 지수 성과, 주요 보유종목 내역, 및 시장상황에 대한 코멘트 정보가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적 운용보고서 자료 외 추가적으로 운용정보에 대한 요청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br>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Nikko Asset Management"는 리스크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포지션 한도, 투자제한 준수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

**3)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외국통화가치변화에 따라 신탁재산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특정한 비교지수를 지정하여 추종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수행하므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평가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시 성과비교를 위한 비교지수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투자자께서는 [MSCI World Net Return USD Index]를 참조지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MSCI World Net Return USD Index는 선진주식시장 대형 및 중형주 시가총액의 약 85%를 설명하는 지수입니다. 본 참조지수의 성과는 https://www.investing.com/indices/msci-world-net-usd 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을 투자 합니다. 따라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인 해외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전체(또는 일부)는 외국통화로 거래되기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모투자신탁에 관한 위험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환율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다수의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외화표시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위험을 축소하고자 이 투자신탁에서는 주요통화 대비 원화의 변동에 한해 부분 환헤지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환헤지에도 불구하고, Roll-Over, NAV 변동, 선물/선도환 시장 변화, 목표비율과 실제 비율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분 환헤지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재간접투자위험 | 본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
|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
| 해외주식 가격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해외주식 등의 성과는 해당 주식이 상장된 국가 및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에 따른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아 국내주식에 투자에 비해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
| 파생상품 위험 |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때때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을 달성하고 수익률을 높이며 포트폴리오 분산을 목적으로 직접 투자의 방편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에 추가하여, 파생상품의 경우 가격산정 및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변동이 관련 기초자산, |

| | |
|---|---|
| | 금리 또는 지수의 변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신 용 위 험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의 신용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이 자 율 변 동 에 따 른 위 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 주요내용 |
|---|---|
| 국 가 위 험 |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해외 투자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위펀드의 투자대상 국가와 설립국가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 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 이 투자신탁 운용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현실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 운용사 위험 | 본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는 투자대상 선정, 인수, 청산, 차입 및 현금관리 업무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의 영향을 받으며, 투자 운용인력의 운용 능력 및 전문성의 영향을 받습니다.<br>해당 운용사가 해산, 청산 또는 파산 시 이러한 운용 계약에 따른 업무를 중단하여 펀드 투자 및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본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의 대표운용인력의 이탈 및 교체 시 장기 운용 안정성 및 투자 후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해외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br>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
| 집중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전세계에 상장된 글로벌 혁신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에 따라, 보다 분산투자가 잘 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전 략 실 패 위 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있어 파괴적 혁신이라는 테마 안에 가장 확신이 드는 투자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는 회사들이 해당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도 경쟁업체, 산업국 또는 정부로부터의 정치 및 법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괴적 혁신이나 기술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파괴적 혁신이나 기술이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피 투 자 집합투자기구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가입클래스를 더 이상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이 투자신탁이 가입한 클래스를 다른 적절한 클래스로 |

| | |
|---|---|
| 가입 클래스 변경 위험 |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격, 보수체계 등의 변경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가 기대하는 성과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 성과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가입 클래스 해지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가입클래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및 상위펀드에 대한 인가의 종료,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의 청산 등의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및 가입클래스가 해지되어 예기치 않은 비용의 지출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과세 위험 |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투자대상국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br>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 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 주요내용 |
|---|---|
| 순자산가치 변동 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펀드규모위험 | 투자신탁은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오퍼레이션 위험 |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 투자대상국가의 휴일 및 이 펀드가 투자하는 종목이 등록된 국가의 휴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 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
| 유동성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매 대금 지연 위험 | 국제 결재와 관련된 송금 지연 발생 및 투자대상 국가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할 경우, 환매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대량환매위험 |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위험 |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 |
|---|---|
| |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br>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br>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br>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br>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br>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br>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br>4. 기타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 |
| 투자신탁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소규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변경 위험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NIKKO AM ARK DISRUPTIVE INNOVATION FUND"의 원본액이 15 억 미만인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 의해 6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 자본 성장 달성을 추구합니다. 이와 같이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해외주식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등 해외투자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위험등급 변경 내역**

| 변경일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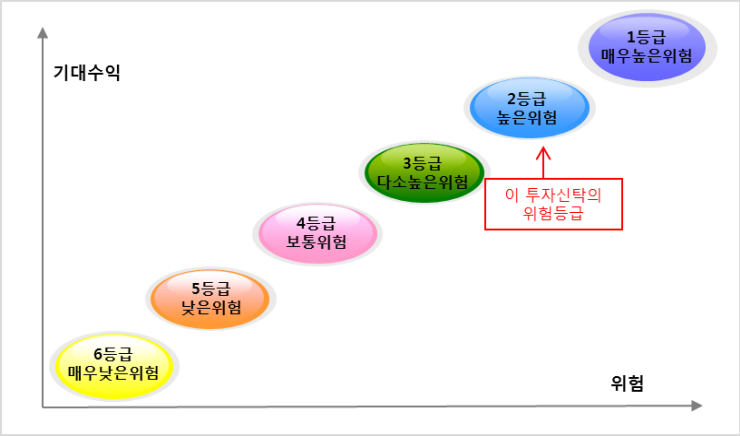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흥국자산운용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분류기준(운용기간 3년 미만인 경우)**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내 용 |
|---|---|---|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br>-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 *높은 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 *보통 위험* |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 *낮은 위험* |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6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br>-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함.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흥국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 분류기준**

| 위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 | 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 다소높은위험 | 보통위험 | 낮은위험 | 매우낮은위험 |
| 표준편차 | 25%초과 | 25%이하 | 15%이하 | 10%이하 | 5%이하 | 0.5%이하 |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정 후 3 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lass 구분 | 가입자격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1.0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온라인 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5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제한없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온라인 가입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펀드 등(C-f) |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br>-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br>- 변액보험<br>- 최초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가입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최초 납입금액 10억원 이상의 가입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중 온라인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②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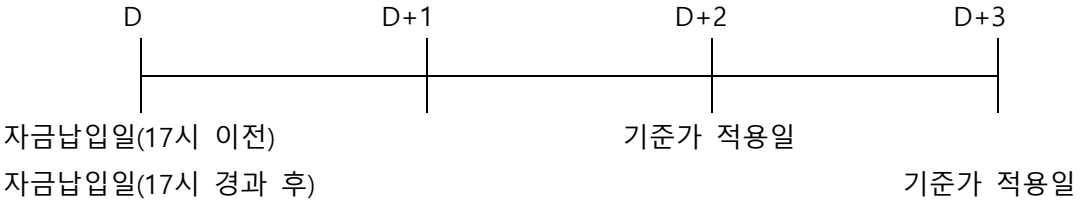


※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환매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8 영업일(D+7)**에 환매대금 지급

②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D+8)**에 환매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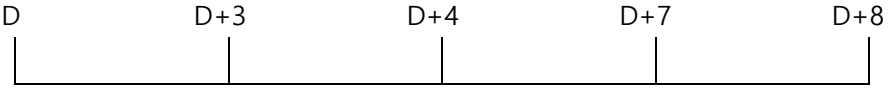

환매청구일(17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17시 경과 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 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 시[오후 5 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기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6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7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①내지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 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 주요 내용 |
|---|---|
| 산정방법 |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산정주기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
| 공시시기 | 집합투자업자는 통보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해 매일 공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총 순자산을 참조하여 산정됩니다. 총 순자산은 각 보유하고 있는 자산항목 모두를 합한 금액에 관련 부채 및 약정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기준가격은 총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평가일: 주중에 은행이 룩셈부르크에서 영업을 위해 개장한 날("평가일")에 대하여, 동 일자로 일자가 매겨진 기준가격이 존재합니다. 단, 보유 종목의 증권거래소가 폐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기준가격은 본 회사의 등록사무소, 현지 대행회사 및 이사회가 지정한 신문과 웹사이트 https://emea.nikkoam.com/ucits/nguf 혹은 https://markets.ft.com/data/funds/tearsheet/historical?s=LU1861556378:USD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 기준가격의 산정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발행, 전환 및 환매를 중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br>-투자자산의 상당 부분이 상장되는 외환시장이나 증권거래소의 폐장 기간(통상적인 폐장기간 제외) 또는 매매가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중지된 |

| | |
|---|---|
| | 기간의 경우<br>-정치, 경제, 군사, 외환 또는 사회 상황 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합리적이고 통 상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br>*상기 내용은 한국에 등록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최근 정정신고일 기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전체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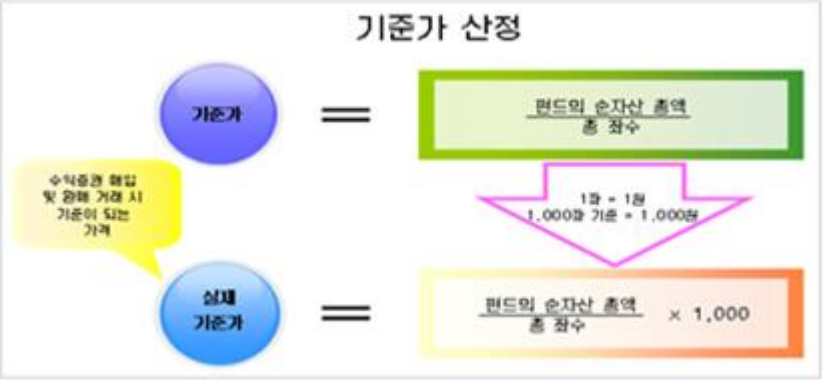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의 최종시가) |
| 국내상장주식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의 최종시가 |
| 비상장주식 등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상장채무증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비상장채무증권 및 기타채무증권 등 | 비상장채권(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제 10 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기업어음 및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 비상장채무증권과 유사한 증권 등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해외파생상품시장의 전날의 가격) |
| 장외파생상품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전날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
| 외화표시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
| 외화표시 채무증권 등 | 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상장채무증권 및 비상장채무증권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등

| 구분 | 주요내용 |
|---|---|
| 구성 | 1. 위원장 : 대표이사<br>2. 위원 : 운용업무 담당 임원 및 해당 운용본부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평가업무 담당 임원 및 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한 자 |
| 업무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br>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br>2.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br>3.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br>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br>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br>6.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br>7.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br>8.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주기적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br>9.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종 류 | 가 입 자 격 | 수수료율 | | | |
|---|---|---|---|---|---|
| | | 선취판매 수수료 | 후취판매 수수료 | 환매 수수료 | 전환 수수료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1.0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이내 | - | - | -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온라인 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5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이내 | - | -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 제한없음 | - | - | -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온라인 가입자 | - | - | -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펀드 등 (C-f) |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br>-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변액보험<br>- 최초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가입자 | | | | |
| 수수료미징구<br>-오프라인<br>-고액(C-i) | 최초 납입금액 10억원 이상의 가입자 | - | - | - | - |
| 수수료미징구<br>-오프라인<br>-랩,금전신탁<br>(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 | - | - | - | - |
| 수수료미징구<br>-오프라인<br>-개인연금(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 | - | -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br>-개인연금(C-pe)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중 온라인 투자자 | - | - | - | - |
| 수수료미징구<br>-오프라인<br>-퇴직연금(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 - | - | - | -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br>-퇴직연금(C-p2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 | - | - | - |
| 수수료후취<br>-온라인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 -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 - | -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슈퍼<br>-개인연금(S-p)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 - | - | - | -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슈퍼<br>-퇴직연금(S-pr)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 - | - | - | - |
| 부과기준 |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전환시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연, %)

| 구분 |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보수 | 신탁업자보수 | 일반사무관리 | 총보수 | 동종유형총보수 | 기타비용 | 총보수·비용 |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 증권거래비용 |

| | 보수 | | | 보수 | | | | | 보수포함) | |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0.4200 | 0.7000 | 0.0500 | 0.0200 | 1.1900 | 1.0000 | 0.0041 | 1.1941 | 2.1341 | 0.1228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0.4200 | 0.3500 | 0.0500 | 0.0200 | 0.8400 | 0.6400 | 0.0028 | 0.8428 | 1.7828 | 0.1216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 0.4200 | 1.0000 | 0.0500 | 0.0200 | 1.4900 | 1.3100 | 0.0044 | 1.4944 | 2.4344 | 0.1213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0.4200 | 0.5000 | 0.0500 | 0.0200 | 0.9900 | 0.8600 | 0.0039 | 0.9939 | 1.9339 | 0.1238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펀드 등 (C-f) | 0.4200 | 0.0100 | 0.0500 | 0.0200 | 0.5000 | - | 0.0030 | 0.5030 | 1.4430 | 0.1286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i) | 0.4200 | 0.0300 | 0.0500 | 0.0200 | 0.5200 | - | 0.0000 | 0.5200 | 1.4600 | 0.0000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금전신탁 (C-w) | 0.4200 | 0.0000 | 0.0500 | 0.0200 | 0.4900 | - | 0.0037 | 0.4937 | 1.4337 | 0.1363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 | 0.4200 | 0.6900 | 0.0500 | 0.0200 | 1.1800 | - | 0.0000 | 1.1800 | 2.1200 | 0.1264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C-pe) | 0.4200 | 0.3450 | 0.0500 | 0.0200 | 0.8350 | - | 0.0000 | 0.8350 | 1.7750 | 0.1410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p2) | 0.4200 | 0.6000 | 0.0500 | 0.0200 | 1.0900 | - | 0.0046 | 1.0946 | 2.0346 | 0.1268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p2e) | 0.4200 | 0.2900 | 0.0500 | 0.0200 | 0.7800 | - | 0.0049 | 0.7849 | 1.7249 | 0.1171 |
|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 0.4200 | 0.3000 | 0.0500 | 0.0200 | 0.7900 | - | 0.0000 | 0.7900 | 1.7300 | 0.1238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 0.4200 | 0.2400 | 0.0500 | 0.0200 | 0.7300 | - | 0.0000 | 0.7300 | 1.6700 | 0.1110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S-pr) | 0.4200 | 0.2300 | 0.0500 | 0.0200 | 0.7200 | - | 0.0000 | 0.7200 | 1.6600 | 0.1239 |
| **지급시기** | 매3개월 후급 | | | | | - |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매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매3개월 후급 | 사유 발생 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

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총보수 비율은 연간 [0.94%]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타비용은 제외)로 추정하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① 기타비용 종류 :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금융비용 종류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 클래스(종류) | 투자기간 | 1 년 | 2년 | 3 년 | 5 년 | 10 년 |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221 | 347 | 476 | 744 | 1,529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318 | 542 | 772 | 1,252 | 2,654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136 | 225 | 316 | 505 | 1,059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232 | 420 | 612 | 1,013 | 2,184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149 | 306 | 471 | 826 | 1,880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250 | 505 | 768 | 1,315 | 2,915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99 | 204 | 313 | 549 | 1,250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98 | 402 | 610 | 1,044 | 2,315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펀드 등(C-f)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50 | 103 | 159 | 278 | 633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48 | 300 | 455 | 779 | 1,728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i)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53 | 108 | 164 | 281 | 623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50 | 303 | 461 | 789 | 1,748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금전신탁(C-w)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49 | 101 | 156 | 273 | 621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47 | 298 | 452 | 774 | 1,717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118 | 242 | 372 | 652 | 1,484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217 | 440 | 669 | 1,145 | 2,538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br>-개인연금(C-pe)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84 | 171 | 263 | 461 | 1,050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82 | 369 | 560 | 959 | 2,125 |
| 수수료미징구<br>-오프라인<br>-퇴직연금(C-p2)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109 | 224 | 345 | 605 | 1,377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209 | 422 | 642 | 1,099 | 2,436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br>-퇴직연금(C-p2e)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78 | 161 | 247 | 434 | 987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77 | 358 | 544 | 932 | 2,065 |
| 수수료후취<br>-온라인슈퍼(S)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79 | 162 | 249 | 437 | 994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77 | 359 | 546 | 934 | 2,071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슈퍼<br>-개인연금(S-p)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73 | 150 | 230 | 403 | 918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71 | 347 | 527 | 902 | 2,000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슈퍼<br>-퇴직연금(S-pr)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72 | 148 | 227 | 398 | 906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70 | 345 | 524 | 897 | 1,988 |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S 수익증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 설정 이후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1)]

주1) 환급비율:(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 이면 1, 환급비율<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 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종류C-p, 종류C-pe, 종류S-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 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br>(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 **수령요건** |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br>(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세액공제** | [납입금액]<br>-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br>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br>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br>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br>[세액공제]<br>-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
| **분리과세한도** |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

| | |
|---|---|
|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 **해지가산세** | 없음 |
|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br>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br>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br>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 **연금외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 |
| **연금계좌 승계** |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종류C-p2, 종류C-P2e, 종류S-pr 수익증권 가입자 :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세액공제** |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br>-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br>※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 **과세이연** |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
| **과세체계 다양성** |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1기(2021.09.01 ~ 2022.08.31) | 회계감사면제 | 해당없음 |

### 가. 요약재무제표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단위 : 원]

| 요약재무상태표 | | | |
|---|---|---|---|
| 항 목 | 제 1 기 | | |
| | 2022.08.31 | | |
| 운용자산 | 1,428,457,100 | | |
| 유가증권 | 1,362,318,119 | | |
| 파생상품 | 0 | | |
| 부동산/실물자산 | 0 | | |
| 현금 및 예치금 | 66,138,981 | | |
| 기타 운용자산 | 0 | | |
| 기타자산 | 45,178,183 | | |
| 자산총계 | 1,473,635,283 | | |
| 운용부채 | 0 | | |
| 기타부채 | 36,988,656 | | |
| 부채총계 | 36,988,656 | | |
| 원본 | 3,885,928,350 | | |
| 수익조정금 | 0 | | |
| 이익조정금 | -2,449,281,723 | | |
| 자본총계 | 1,436,646,627 | |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단위 : 원, %]

| 요약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 1 기 | | |
| | 2022.08.31 | | |
| 운용수익 | -2,226,018,133 | | |
| 이자수익 | 280,761 | | |
| 배당수익 | 0 | | |
| 매매평가차손익 | -2,226,298,894 | | |
| 기타수익 | 0 | | |
| 운용비용 | 1,680 | | |
| 관련회사보수 | 0 | | |
| 매매수수료 | 0 | | |

| | | | |
|---|---|---|---|
| 기타비용 | 1,680 | | |
| 당기순이익 | -2,226,019,813 | | |
| 매매회전율 | 0.00 | | |

※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재무상태표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단위 : 원]

| 재무상태표 | | | |
|---|---|---|---|
| 항 목 | 제 1 기 | | |
| | 2022.08.31 | | |
| 운용자산 | 1,428,457,100 | | |
| 현금및예치금 | 66,138,981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993,461 | | |
| 증거금 | 53,145,520 | | |
| 유가증권 | 1,362,318,119 | | |
| 수익증권 | 1,362,318,119 | | |
| 기타자산 | 45,178,183 | | |
|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38,533,510 | | |
| 정산미수금 | 6,622,000 | | |
| 미수이자 | 22,673 | | |
| 자 산 총 계 | 1,473,635,283 | | |
| 기타부채 | 36,988,656 | | |
| 해지미지급금 | 36,988,656 | | |
| 부 채 총 계 | 36,988,656 | | |
| 원 본 | 3,885,928,350 | | |
| 이익잉여금 | -2,449,281,723 | | |
| 자 본 총 계 | 1,436,646,627 | | |
| 부채 및 자본 총계 | 1,473,635,283 | | |
| 총좌수 | 3,885,928,350 | | |
| 기준가격 | 369.70 | | |

## 다. 손익계산서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 1 기 | | |
| | 2021.09.01 ~ 2022.08.31 | | |
| 운용수익(운용손실) | -2,226,018,133 | | |

| | | | |
|---|---|---|---|
| 투자수익 | 280,761 | | |
| 이자수익 | 280,761 | | |
|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682,669,260 | | |
| 지분증권매매차익 | 25,460 | | |
| 파생상품매매차익 | 681,727,000 | | |
| 외환거래매매차익 | 916,800 | | |
|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2,908,968,154 | | |
| 지분증권매매차손 | 1,168,130,090 | | |
| 파생상품매매차손 | 1,001,685,200 | | |
| 외환거래매매차손 | 343,800 | | |
| 지분증권평가차손 | 738,809,064 | | |
| 운용비용 | 1,680 | | |
| 기타운용비용 | 1,680 | |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2,226,019,813 | | |
|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 -541.55 | |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1/09/01~2022/08/31 | 105 | 105 | 9,144 | 5,822 | 5,258 | 2,159 | 3,886 | 1,437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1/09/01~2022/08/31 | 1 | 1 | 465 | 354 | 32 | 17 | 433 | 165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온라인(A-e)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1/09/01~2022/08/31 | 0 | 0 | 324 | 254 | 19 | 11 | 305 | 117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 (출자지분수) | | (출자지분수) | | (출자지분수) | | (출자지분수) | |
|---|---|---|---|---|---|---|---|---|
| 2021/09/01~2022/08/31 | 1 | 1 | 800 | 683 | 12 | 5 | 789 | 300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 2021/09/01~2022/08/31 | 0 | 0 | 658 | 453 | 125 | 72 | 533 | 204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펀드 등(C-f)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 2021/09/01~2022/08/31 | 100 | 100 | 515 | 500 | 0 | 0 | 515 | 189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C-w)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1/12~2022/08/31 | 16 | 17 | 3,000 | 2,442 | 3,000 | 1,673 | 0 | 0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 2021/10/06~2022/08/31 | 1 | 1 | 1 | 1 | 0 | 0 | 1 | 1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 | | | | | | | | |
|---|---|---|---|---|---|---|---|---|
| 2021/09/23~2022/08/31 | 0 | 0 | 150 | 150 | 101 | 93 | 49 | 19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1/11/03~2022/08/31 | 0 | 0 | 161 | 136 | 12 | 6 | 148 | 55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1/11/03~2022/08/31 | 0 | 0 | 1,339 | 666 | 439 | 192 | 900 | 337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1/09/01~2022/08/31 | 1 | 1 | 92 | 63 | 18 | 7 | 74 | 27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1/09/01~2022/08/31 | 4 | 4 | 204 | 103 | 169 | 70 | 35 | 13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1/10/22~2022/08/31 | 0 | 0 | 19 | 15 | 0 | 0 | 19 | 7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기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2021/09/01 ~ 2022/08/31 | - | - | - | |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 -63.03 | - | - | - | -63.03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익률변동성 | 46.32 | - | - | - | 46.32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 | - | - | - | -65.84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 | - | - | - | -65.69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 - | - | - | -65.97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 - | - | - | -65.74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펀드 등(C-f) | -63.24 | - | - | - | -63.24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C-w) | - | - | - | - | -73.37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 | - | - | - | -64.38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 | - | - | - | - | -65.70 |

| | | | | | |
|---|---|---|---|---|---|
| 온라인-개인연금(C-pe)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 | - | - | - | -75.69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 | - | - | - | -75.59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63.35 | - | - | - | -63.35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63.32 | - | - | - | -63.32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 - | - | - | - | -71.84 |
| 비교지수 | - | - | - | - | - |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기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5년차 |
|---|---|---|---|---|---|
| | 2021/09/01 ~ 2022/08/31 | - | - | - | - |

| | | | | | |
|---|---|---|---|---|---|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 -63.03 | - |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65.84 | - |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65.69 | - |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65.97 | - |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65.74 | - |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펀드 등(C-f) | -63.24 | - |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C-w) | -73.37 | - |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64.38 | - |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65.70 | - |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75.69 | - |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75.59 | - | - | - | - |

| | | | | | |
|---|---|---|---|---|---|
| (C-p2e)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63.35 | - |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63.32 | - |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 -71.84 | - |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 |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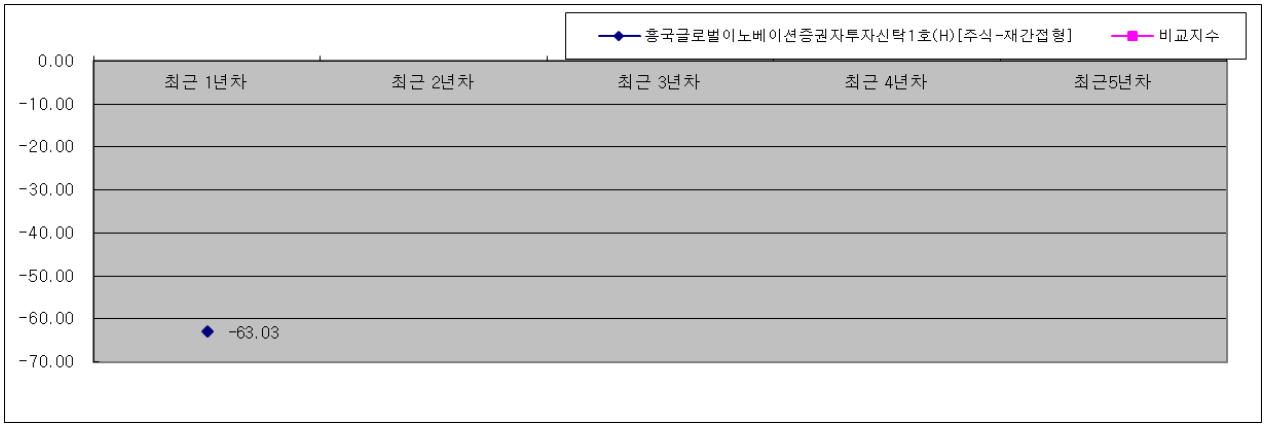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2022.08.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등 | 집합투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대한민국 | 0 | 0 | 0 | 1,362 | 53 | 0 | 0 | 0 | 0 | 13 | 45 | 1,474 |
| | (0.00) | (0.00) | (0.00) | (92.45) | (3.61) | (0.00) | (0.00) | (0.00) | (0.00) | (0.88) | (3.06) | (100.00) |
| 자산합계 | 0 | 0 | 0 | 1,362 | 53 | 0 | 0 | 0 | 0 | 13 | 45 | 1,474 |
| | (0.00) | (0.00) | (0.00) | (92.45) | (3.61) | (0.00) | (0.00) | (0.00) | (0.00) | (0.88) | (3.06) | (100.00) |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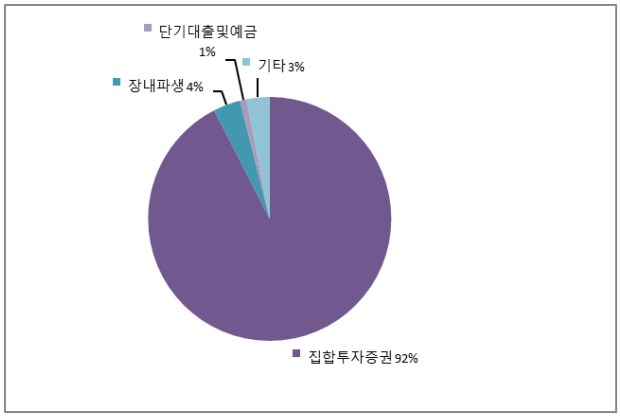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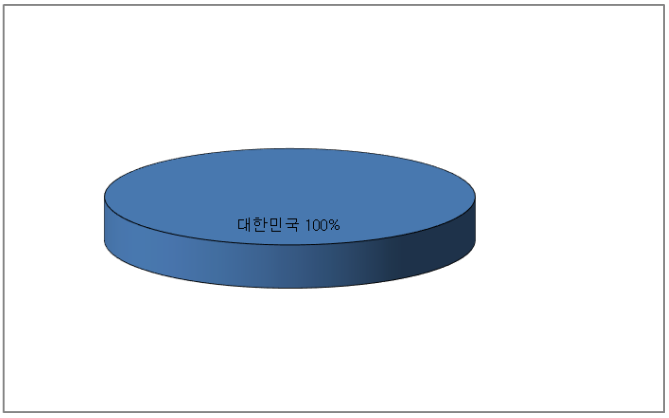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2.08.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등 | 집합투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미국 | 0 | 0 | 0 | 2,014 | 0 | 0 | 0 | 0 | 0 | 70 | 0 | 2,084 |
| | (0.00) | (0.00) | (0.00) | (96.65) | (0.00) | (0.00) | (0.00) | (0.00) | (0.00) | (3.35) | (0.00) | (89.12) |
| 대한민국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54 | 0 | 254 |
|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100.00) | (0.00) | (10.87) |
| 유럽연합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100.00) | (0.00) | (0.00) |
| 자산합계 | 0 | 0 | 0 | 2,014 | 0 | 0 | 0 | 0 | 0 | 324 | 0 | 2,339 |
| | (0.00) | (0.00) | (0.00) | (86.13) | (0.00) | (0.00) | (0.00) | (0.00) | (0.00) | (13.87) | (0.00) | (100.00) |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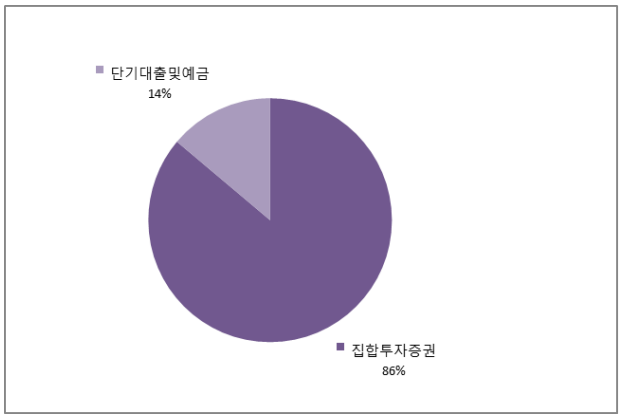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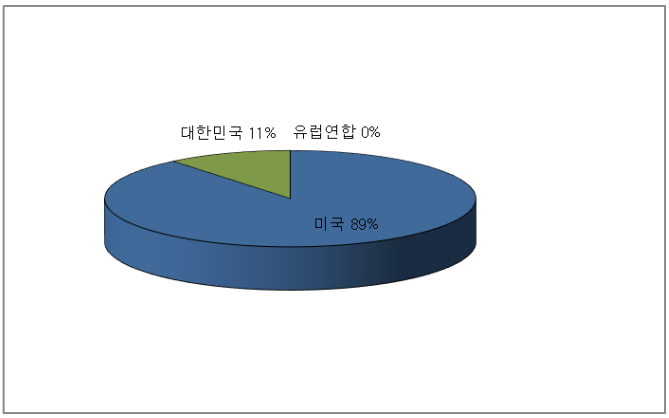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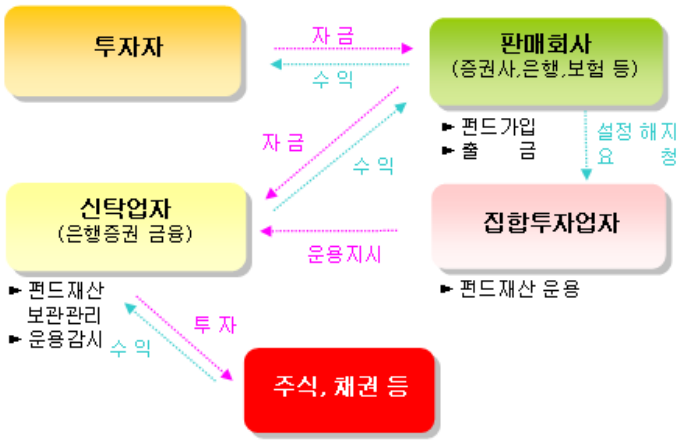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 회사명 | 흥국자산운용(주)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흥국생명빌딩 19 층)<br>(연락처 : 02-2122-2800, www.hkfund.co.kr) |
| 회사 연혁 | - 1999.08.23 태광에셋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br>- 2000.02.11 투자신탁운용업 허가<br>- 2000.02.16 태광투자신탁운용㈜로 상호변경<br>- 2000.06.19 자산운용업 허가<br>- 2006.03.20 흥국투자신탁운용㈜로 상호변경<br>- 2009.02.04 집합투자업 인가<br>- 2012.06.07 흥국자산운용㈜로 상호변경 |
| 자본금 | 100 억 |
| 주요주주현황 | 흥국증권(72.0%), 이호진(20.0%), 기타(8%) |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③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④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 재무상태표 | | | 손익계산서 | | |
|---|---|---|---|---|---|
| 항 목 | '21.12.31 | '20.12.31 | 항 목 | '21.12.31 | '20.12.31 |
| 유동자산 | 33,305 | 41,062 | 영업수익 | 28,708 | 25,251 |
| 고정자산 | 19,746 | 7,999 | 영업비용 | 15,879 | 14,337 |
| 자산총계 | 53,051 | 49,541 | 영업이익 | 12,829 | 10,914 |
| 유동부채 | 5,142 | 4,112 | 영업외수익 | 35 | 26 |
| 고정부채 | 721 | 442 | 영업외비용 | 16 | 92 |
| 부채총계 | 5,863 | 4,554 | 경상이익 | 12,848 | 10,848 |
| 자본금 | 10,000 | 10,000 | 법인세비용 | 2,915 | 2,447 |
| 이익잉여금 | 37,188 | 34,988 | 당기순이익 | 9,933 | 8,401 |
| 자본총계 | 47,188 | 44,988 | | | |

**라. 운용자산 규모**

(2022.08.31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 증권형 | | | | | 단기금융 | 파생형 | 부동산 | 특별자산 | 혼합자산 | 기관전용사모펀드 | 총 계 |
|---|---|---|---|---|---|---|---|---|---|---|---|---|
|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투자계약 | 재간접형 | | | | | | | |
| 수탁고 | 5,190 | 4,465 | 62,202 | - | 614 | 27,459 | 1,181 | 5,746 | 28,853 | 368 | - | 136,079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신탁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회빌딩<br>(연락처 : 1599-9999) |
| 회사연혁 |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의무

- 수탁회사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②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하나펀드서비스(주)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 층<br>(연락처 : 02-6714-4600) |
| 회사연혁 | 홈페이지 참조 (www.hanais.com)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주) | KIS 채권평가(주) | NICE 피앤아이(주) | (주) 에프앤자산평가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 층 (02-399-33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 층 (02-3770-04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02-398-3900)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2 로 61(마곡동) (02-769-7700) |
|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참조)** | www.koreaap.com | www.bond.co.kr | www.nicepni.com | www.fnpricing.com |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을 합니다.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함)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 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 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 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②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규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5)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NIKKO AM ARK DISRUPTIVE INNOVATION FUND"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및4)의 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

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 개 종목

-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6 개월, 9 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자투자신탁의 자산보관· 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자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법 제 247 조제 5 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1회 이상 공고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①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투자설명서 변경(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 구분 | | 선정 기준 |
|---|---|---|
| 증권 | 지분증권 | 리서치자료 제공 능력, 투자정보 제공 및 주문집행의 신속·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평가·선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
| | 채무증권 | 정보제공 능력, 매매체력의 신속·정확성, 거래보안유지, 결제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평가·선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
| 장내파생상품 | 증권의 거래와 유사 | |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이 투자신탁을 통한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1) 고유재산 추가투자

| | |
|---|---|
| 투자주체 | 흥국자산운용 |
| 투자목적 | 향후 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당사 고유재산의 투자가능한도 내에서 투자 |
| 투자시기 | 최초 설정일 |
| 투자금액 | 1억원 |
| 투자기간 | 1년 이상 |
| 투자금 회수계획 | 고유자산의 유동성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

2) 고유재산 추가투자

| | |
|---|---|
| 투자주체 | 흥국자산운용 |
| 투자목적 | 향후 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당사 고유재산의 투자가능한도 내에서 투자 |
| 투자시기 | 2021년 9월 |
| 투자금액 | 4억원 |
| 투자기간 | 1년 이상 |
| 투자금 회수계획 | 고유자산의 유동성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

**나. 동일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고유재산 투자현황**

1) 고유재산 추가투자

| 다른 자투자신탁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2호(UH)[주식-재간접형]** |
|---|---|
| **투자주체** | 흥국자산운용 |
| **투자목적** | 향후 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당사 고유재산의 투자가능한도 내에서 투자 |
| **투자시기** | 최초 설정일 |
| **투자금액** | 1억원 |
| **투자기간** | 1년 이상 |
| **투자금 회수계획** | 고유자산의 유동성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

2) 고유재산 추가투자

| 다른 자투자신탁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자투자신탁2호(UH)[주식-재간접형]** |
|---|---|
| **투자주체** | 흥국자산운용 |
| **투자목적** | 향후 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당사 고유재산의 투자가능한도 내에서 투자 |
| **투자시기** | 2021년 9월 |
| **투자금액** | 4억원 |
| **투자기간** | 1년 이상 |
| **투자금 회수계획** | 고유자산의 유동성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붙임] 용어풀이

| 용어 | 내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 |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신탁업자 |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작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 수탁고 |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집합투자기구) |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단위형(집합투자기구)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플래스 펀드로서 자급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판매수수료 |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
| 환매수수료 |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
| 설정 |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
| 해지 |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 환매 |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수익자총회 |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 |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
| 기업공개 |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회사의 주식을 매출하거나 모집하여 소유 지분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
| 환헤지 |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헷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